의안 번호	958

울산광역시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연월일 : 2012. 12. 4.(화)
나.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회부 : 2012. 12. 6.(목)
라. 위원회심사 : 2012. 12. 13.(목)

2. 개정이유

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되었던 많은 부분이 시·도의 조례로 위임되었으며,
나. 2012. 10. 11일부로「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의 조례에서 정한 사항 삭제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및 방법 등 삭제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규정(시 조례 제3조~제20조)

나.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지정(안 제6조)
다.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라. 자율관리협정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마.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바.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 규정 신설(안 제20조)
아.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사이버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조제8항)

4. 근거법령

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5. 검토의견

2011. 10.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구간 업무조정으로 인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며,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및 방법 등 조항은 삭제, 제6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7조 자율관리 협정,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20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 제25조 교육의 위탁 등으로 개정안 가결함이 필요함.